

자연휴양림 등 타당성 평가의 세부기준

제 정 2016. 2.26. 고시 제2016- 23호
 개 정 2018. 8. 9. 고시 제2018- 71호
 개 정 2023. 7.24. 고시 제2023- 57호
 개 정 2024. 3.20. 고시 제2024- 23호
 개 정 2026. 5.22. 고시 제2026- 49호

1. 자연휴양림 타당성 평가 조사서

항 목	평 가 점 수				
	1 점	2 점	3 점	4 점	5 점
가. 경 관					
(1) 표고차	100m미만	200m미만	300m미만	400m미만	400m이상
(2) 환경파괴 정도	매우 심함	심한 편입	보 통	건 전 함	매우 건전
(3) 관망지점 유무 *주1)	1방향만 가능	2방향까지 가능	3방향까지 가능	3방향이 2곳 이상 가능	4방향 모두 가능
(4) 불쾌인자 *주2)	불쾌인자 2이상	불쾌인자 1	보 통	아름다움	매우 아름다움
(5) 독특성 *주3)					
○ 폭 포	없 음	빈 약	높이 2~3m	높이 4~5m, 높이 2~3m 2개	높이 6m이상 1개 또는 4~5m 2개, 2~3m 4개
○ 특징 바위	없 음	빈 약	넓이 25~50m ² 미만	50~100m ² 미만, 25~50m ² 미만 2개	100m ² 이상 또는 10~100m ² 미만 2개, 25~50m ² 미만 4개
○ 소(沼)	없 음	빈 약	직경 4~6m	직경 7~9m	직경 10m이상 또는 7~9m 2개, 4~6m 4개
○ 동 굴	없 음	-	-	-	동굴 있음
(6) 상층목 수령	10년 이내	20년 이내	30년 이내	40년 이내	40년 초과
(7) 식물 다양성	단 순	비교적 단순	보 통	다양, 침활혼효	다양, 특산식생
(8) 생육 상태 (울폐도)	매우 불량	불 량	보 통	양 호	매우 양호
(9) 야생동물의 종 다양성	드 목	청취 또는 흔적 확인	시·청취 가능	종 다양성 높다	종 다양성 매우 높다
나. 위 치					
(1) 비포장 도로 거리	비포장도로 25km 이상	24km내	16km내	8km내	4km내
(2) 접근도로 폭	이륜차 이하	1차선 확장 가능	1차선	2차선 확장 가능	2차선
(3) 인접도시와	지수 5이상	지수 4이상	지수 3이상	지수 2이상	지수 2 미만

항 목	평 가 점 수				
	1 점	2 점	3 점	4 점	5 점
거리지수 *주4)		5미만	4미만	3미만	
(4) 대중교통 이용 편이성 *주5)	없 음	-	보 통	-	높 음
다. 수 계 *주6)					
(1) 주 류 장	주계곡 최장의 10%	주계곡 최장의 20%	주계곡 최장의 30%	주계곡 최장의 40%	주계곡 최장의 50%
(2) 최대계류폭	2m이하	3~4m	5~6m	7~8m	9m이상
(3) 수 질	매우 오염	약간 오염	보 통	깨끗한 편임	매우 깨끗함
(4) 수변 이용가능 (길이)	주류장 길이의 20% 미만	주류장 길이의 20% 이상	주류장 길이의 50% 이상	주류장 길이의 70% 이상	주류장 길이의 80% 이상
(5) 수변 이용가능 (평균폭)	한쪽 폭 5m이하	6~10m	11~15m	16~20m	21m이상
(6) 수계 경관	매우 나쁨	나쁨	보 통	양 호	매우 양호
(7) 유수 기간	3개월	4개월	6개월	8개월	12개월(상시)
라. 휴양유발					
(1) 연계가능한 역사문화자원 유무 *주7)	1~2종	-	3~4종	-	5종 이상
(2) 휴양기회의 다양성 *주8)	1~2종	-	3~4종	-	5종 이상
(3) 개발 전 이용 수준	이용 전무	-	약간 이용	-	보통 이용
마. 개발여건					
(1) 시설가능면적 (경사15° 이하)	지정대상산림 최소면적의 1% 미만	지정대상산림 최소면적의 2% 미만	지정대상산림 최소면적의 3% 미만	지정대상산림 최소면적의 5% 미만	지정대상산림 최소면적의 5% 이상
(2) 토지소유권 *주9)	소유자 5인 이상	소유자 4인	소유자 3인	소유자 2인	소유자 1인
(3) 토지이용 제한요인 *주10)	매우 많음	많 음	보 통	없는 편	전혀 없음
(4) 과거 재해 빈번도	빈 번	-	드 므	-	없 음
(5) 예상 재해 위험도 *주11)	높 음	-	보 통	-	낮 음
(6) 예상개발비 (지형변형정도)	필 요	-	보 통	-	없 음
(7) 주차장 확보	주차 공간 불가	매 입	확보 가능 (소규모)	확보 가능 (대규모)	기존 주차장 활용 가능

*주1) 관망지점 : 자연휴양림 지정 예정지내에서 예정지 밖을 조망할 수 있는 지점

*주2) 불쾌인자 : 1. 산사태발생지 2. 미복구절개지 3. 채석장 등 광산 4. 산불발생지 5. 부적합 구조물 6. 쓰레기 매립 7. 빈번한 차량운행

*주3) 특 특 성 : 폭포, 특징바위, 소, 동굴 중 2개 항목의 평균을 평점에 집계

*주4) 거리지수 : 접근시간(0.5시간 단위) × 도시 지수(300만명 이상 : 1, 100만~300만명 미만 : 2, 10만~100만명 미만 : 3, 10만명 미만 : 4)로서 최소값 적용

- *주5)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: 예정지 진입지점까지 접근 가능한 버스, 지하철 등 자가용 이외의 교통수단 이용가능 여부
- *주6) 수계 : 주류장(主流長 : 주된 계곡의 길이)의 1/3지점에서 평가
- *주7) 역사문화자원 : 대상지 주변 반경 5km 이내 보호수, 천연기념물, 사적, 문화재, 특산임산물 등
- *주8) 휴양기회 : 산책, 휴식, 야영, 자연학습, 등산, 놀이, 낚시, 수렵, 계곡물놀이, 승마 등
- *주9) 토지소유권이 다수이더라도 이용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1인으로 인정
- *주10) 예정지내 문화재보호구역,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등 토지이용제한요인 편입 정도로 판단
- *주11) 예상 재해위험도 : 산사태, 급경사지, 토석류 등의 위험요인. 산사태취약지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불가능. 다만, 방재시설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

2. 치유의 숲 타당성 평가 조사서

항 목	평 가 점 수				
	1 점	2 점	3 점	4 점	5 점
가. 경 관					
(1) 표고차	100m미만	200m미만	300m미만	400m미만	400m이상
(2) 환경파괴 정도	매우 심함	심한 편입	보 통	건 진 함	매우 건진
(3) 관망지점 유무 *주1)	1방향만 가능	2방향까지 가능	3방향까지 가능	3방향이 2곳 이상 가능	4방향 모두 가능
(4) 불쾌인자 *주2)	불쾌인자 2이상	불쾌인자 1	보 통	아름다움	매우 아름다움
(5) 독특성 *주3)					
○ 폭 포	없 음	빈 약	높이 2~3m	높이 4~5m, 높이 2~3m 2개	높이 6m이상 1개 또는 4~5m 2개, 2~3m 4개
○ 특징 바위	없 음	빈 약	넓이 25~50㎡ 미만	50~100㎡미만, 25~50㎡미만 2개	100㎡이상 또는 10~100㎡미만 2개, 25~50㎡ 미만 4개
○ 소(沼)	없 음	빈 약	직경 4~6m	직경 7~9m	직경 10m이상 또는 7~9m 2개, 4~6m 4개
○ 동 굴	없 음	-	-	-	동굴 있음
(6) 상층목 수령	10년 이내	20년 이내	30년 이내	40년 이내	40년 초과
(7) 식물 다양성	단 순	비교적 단순	보 통	다양, 침활혼효	다양, 특산식생
(8) 생육 상태 (울폐도)	매우 불량	불 량	보 통	양 호	매우 양호
(9) 야생동물의 종 다양성	드 목	청취 또는 흔적 확인	시·청취 가능	종 다양성 높다	종 다양성 매우 높다
나. 위 치					
(1) 비포장 도로 거리	비포장도로 25km 이상	24km내	16km내	8km내	4km내
(2) 접근도로 폭	이륜차 이하	1차선 확장 가능	1차선	2차선 확장 가능	2차선
(3) 인접도시와 거리지수 *주4)	지수 5이상	지수 4이상 5미만	지수 3이상 4미만	지수 2이상 3미만	지수 2 미만
(4) 대중교통 이용 편이성 *주5)	없 음	-	보 통	-	높 음

항 목	평 가 점 수				
	1 점	2 점	3 점	4 점	5 점
다. 수 계 *주6)					
(1) 주 류 장	주계곡 최장의 10%	주계곡 최장의 20%	주계곡 최장의 30%	주계곡 최장의 40%	주계곡 최장의 50%
(2) 최대계류폭	2m이하	3~4m	5~6m	7~8m	9m이상
(3) 수 질	매우 오염	약간 오염	보 통	깨끗한 편임	매우 깨끗함
(4) 수변 이용가능 (길이)	주류장 길이의 20% 미만	주류장 길이의 20% 이상	주류장 길이의 50% 이상	주류장 길이의 70% 이상	주류장 길이의 80% 이상
(5) 수변 이용가능 (평균폭)	한쪽 폭 5m이하	6~10m	11~15m	16~20m	21m이상
(6) 수계 경관	매우 나쁨	나쁨	보 통	양 호	매우 양호
(7) 유수 기간	3개월	4개월	6개월	8개월	12개월(상시)
라. 휴양유발					
(1) 연계가능한 역사문화자원 유무 *주7)	1~2종	-	3~4종	-	5종 이상
(2) 휴양기회의 다양성 *주8)	1~2종	-	3~4종	-	5종 이상
(3) 개발 전 이용 수준	이용 전무	-	약간 이용	-	보통 이용
마. 개발여건					
(1) 시설가능면적 (경사15° 이하)	지정대상산림 최소면적의 1% 미만	지정대상산림 최소면적의 2% 미만	지정대상산림 최소면적의 3% 미만	지정대상산림 최소면적의 5% 미만	지정대상산림 최소면적의 5% 이상
(2) 토지소유권 *주9)	소유자 5인 이상	소유자 4인	소유자 3인	소유자 2인	소유자 1인
(3) 토지이용 제한요인 *주10)	매우 많음	많 음	보 통	없는 편	전혀 없음
(4) 과거 재해 빈번도	빈 번	-	드 므	-	없 음
(5) 예상 재해 위험도 *주11)	높 음	-	보 통	-	낮 음
(6) 예상개발비 (지형변형정도)	필 요	-	보 통	-	없 음
(7) 주차장 확보	주차 공간 불가	매 입	확보 가능 (소규모)	확보 가능 (대규모)	기존 주차장 활용 가능
바. 치유환경					
(1) 피톤치드 농도 *주12)	0.2 $\mu\text{g}/\text{m}^3$ 미만	0.5 $\mu\text{g}/\text{m}^3$ 미만	0.8 $\mu\text{g}/\text{m}^3$ 미만	1.1 $\mu\text{g}/\text{m}^3$ 미만	1.4 $\mu\text{g}/\text{m}^3$ 이상
(2) 음이온 농도 *주12)	150개/cm ³ /일 미만	700개/cm ³ /일 미만	1,000개/cm ³ /일 미만	2,000개/cm ³ /일 미만	2,000개/cm ³ /일 이상
(3) 해발고	100m 미만	2,000m 이상	100m~200m 미만과 1,500m~ 2,000m 미만	200m~300m 미만과 1,000m~ 1,500m 미만	300m이상~ 1,000m 미만

*주1) 관망지점 : 치유의 숲 조성 예정지내에서 예정지 밖을 조망할 수 있는 지점

*주2) 불쾌인자 : 1. 산사태발생지 2. 미복구절개지 3. 채석장 등 광산 4. 산불피해지 5. 부적합 구조물 6. 쓰레기 매립 7. 빈번한 차량운행

- *주3) 독 특 성 : 폭포, 특징바위, 소, 동굴 중 2개 항목의 평균을 평점에 집계
- *주4) 거리지수 : 접근시간(0.5시간 단위) × 도시 지수(300만명 이상 : 1, 100만~300만명 미만 : 2, 10만~100만명 미만 : 3, 10만명 미만 : 4)로서 최소값 적용
- *주5)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: 예정지 진입지점까지 접근 가능한 버스, 지하철 등 자가용 이외의 교통수단 이용가능 여부
- *주6) 수계 : 주류장(主流長 : 주된 계곡의 길이)의 1/3지점에서 평가
- *주7) 역사문화자원 : 대상지 주변 반경 5km이내 보호수, 천연기념물, 사적, 문화재, 특산임산물 등
- *주8) 휴양기회 : 산책, 휴식, 야영, 자연학습, 등산, 놀이, 낚시, 수렵, 계곡물놀이, 승마 등
- *주9) 토지소유권이 다수이더라도 이용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1인으로 인정
- *주10) 예정지내 문화재보호구역,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등 토지이용제한요인 편입 정도로 판단
- *주11) 예상 재해위험도 : 산사태, 급경사지, 토석류 등의 위험요인. 산사태취약지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불가능. 다만, 방재시설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
- *주12) 분석결과표를 별첨자료로 제출하며, 조사하는 자연휘발성유기화합물(NVOC)의 종류(1기압 250℃이하에서 최소 비등점을 가지는 유기화합물)는 다음표에 제시한 종류로 한다.

<표>

피톤치드에 해당하는 자연휘발성유기화합물						
	물질명		분자식	CAS No.	IUPAC Name	분자량 (g/mol)
1	보르네올	Borneol	C ₁₀ H ₁₈ O	464-43-7	(1R,2S,4R)-1,7,7-trimethylbicyclo[2.2.1]heptan-2-ol	154.25
2	캄펜	Camphene	C ₁₀ H ₁₆	79-92-5	2,2-dimethyl-3-methylidenebicyclo[2.2.1]heptane	136.23
3	캄퍼	Camphor	C ₁₀ H ₁₆ O	76-22-2	1,7,7-trimethylbicyclo[2.2.1]heptan-2-one	152.23
4	델타-카렌	δ-Carene	C ₁₀ H ₁₆	13466-78-9	3,7,7-trimethylbicyclo[4.1.0]hept-3-ene	136.23
5	카리오필렌	Caryophyllene	C ₁₅ H ₂₄	87-44-5	(1R,4E,9S)-4,11,11-trimethyl-8-methylidenebicyclo[7.2.0]undec-4-ene	204.35
6	1,8-시네올 (유칼립톨)	1,8-Cineole (Eucalyptol)	C ₁₀ H ₁₈ O	470-82-6	1,3,3-trimethyl-2-oxabicyclo[2.2.2]octane	154.25
7	시멘	Cymene	C ₁₀ H ₁₄	99-87-6	1-methyl-4-propan-2-ylbenzene	134.22
8	펜톤	Fenchone	C ₁₀ H ₁₆ O	4695-62-9	(1S,4R)-1,3,3-trimethylbicyclo[2.2.1]heptan-2-one	152.23
9	리모넨	Limonene	C ₁₀ H ₁₆	138-86-3	1-methyl-4-prop-1-en-2-ylcyclohexene	136.23
10	멘톨	Menthol	C ₁₀ H ₂₀ O	1490-04-6	5-methyl-2-propan-2-ylcyclohexan-1-ol	156.26
11	미르센	Myrcene	C ₁₀ H ₁₆	123-35-3	7-methyl-3-methylideneocta-	136.23

	물질명		분자식	CAS No.	IUPAC Name	분자량 (g/mol)
					1,6-diene	
12	알파-펠란드렌	α -Phellandrene	C ₁₀ H ₁₆	99-83-2	2-methyl-5-propan-2-ylcyclohexa-1,3-diene	136.23
13	알파-피넨	α -Pinene	C ₁₀ H ₁₆	80-56-8	2,6,6-trimethylbicyclo[3.1.1]hept-2-ene	136.23
14	베타-피넨	β -Pinene	C ₁₀ H ₁₆	127-91-3	6,6-dimethyl-2-methylidenebicyclo[3.1.1]heptane	136.23
15	사비넨	Sabinene	C ₁₀ H ₁₆	3387-41-5	4-methylidene-1-propan-2-ylbicyclo[3.1.0]hexane	136.23
16	사비넨 하이드레이트	Sabinene hydrate	C ₁₀ H ₁₈ O	546-79-2	2-methyl-5-propan-2-ylbicyclo[3.1.0]hexan-2-ol	154.25
17	알파-테르피넨	α -Terpinene	C ₁₀ H ₁₆	99-86-5	1-methyl-4-propan-2-ylcyclohexa-1,3-diene	136.23
18	감마-테르피넨	γ -Terpinene	C ₁₀ H ₁₆	99-85-4	1-methyl-4-propan-2-ylcyclohexa-1,4-diene	136.23
19	알파-테르피네올	α -Terpineol	C ₁₀ H ₁₈ O	98-55-5	2-(4-methylcyclohex-3-en-1-yl)propan-2-ol	154.25
20	테르피놀렌	Terpinolene	C ₁₀ H ₁₆	586-62-9	1-methyl-4-propan-2-ylidene cyclohexene	136.23

* 비고: CAS No(Chemical Abstracts Service Registry Numbers)는 미국화학회(ACS; American Chemical Society)에서 동질성을 가지는 물질 등에 부여한 고유번호를 말한다.

3. 산림욕장 타당성 평가 조사서

항 목	평 가 점 수				
	1 점	2 점	3 점	4 점	5 점
가. 경 관					
(1) 환경과피 정도	매우 심함	심한 편임	보 통	건 전 함	매우 건전
(2) 관망지점 유무 *주1)	1방향만 가능	2방향까지 가능	3방향까지 가능	3방향이 2곳 이상 가능	4방향 모두 가능
(3) 불쾌인자 *주2)	불쾌인자 2이상	불쾌인자 1	보 통	아름다움	매우 아름다움
(4) 상충목 수령	10년 이내	20년 이내	30년 이내	40년 이내	40년 초과
(5) 생육 상태 (울폐도)	매우 불량	불 량	보 통	양 호	매우 양호
나. 위 치					
(1) 접근도로 폭	이륜차 이하	1차선 확장 가능	1차선	2차선 확장 가능	2차선
(2) 인접도시와 거리지수 *주3)	지수 5이상	지수 4이상 5미만	지수 3이상 4미만	지수 2이상 3미만	지수 2 미만
(3) 대중교통 이용 편이성 *주4)	없 음	-	보 통	-	높 음
다. 수 계 *주5)					
(1) 수 질	매우 오염	약간 오염	보 통	깨끗한 편임	매우 깨끗함
(2) 수계 경관	매우 나쁨	나쁨	보 통	양 호	매우 양호

항 목	평 가 점 수				
	1 점	2 점	3 점	4 점	5 점
라. 휴양유발					
(1) 휴양기회의 다양성 *주6)	1~2종	-	3~4종	-	5종 이상
(2) 개발 전 이용 수준	이용 전무	-	약간 이용	-	보통 이용
마. 개발여건					
(1) 예상 재해 위험도 *주7)	높 음	-	보 통	-	낮 음
(2) 예상개발비 (지형변형정도)	필 요	-	보 통	-	없 음
(3) 주차장 확보	주차 공간 불가	매 입	확보 가능 (소규모)	확보 가능 (대규모)	기존 주차장 활용 가능

*주1) 관망지점 : 산림욕장 조성 예정지내에서 예정지 밖을 조망할 수 있는 지점

*주2) 불쾌인자 : 1. 산사태발생지 2. 미복구절개지 3. 채석장 등 광산 4. 산불피해지 5. 부적합 구조물 6. 쓰레기 매립 7. 빈번한 차량운행

*주3) 거리지수 : 접근시간(0.5시간 단위) × 도시 지수(300만명 이상 : 1, 100만~300만명 미만 : 2, 10만~100만명 미만 : 3, 10만명 미만 : 4)로서 최소값 적용

*주4)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: 예정지 진입지점까지 접근 가능한 버스, 지하철 등 자가용 이외의 교통수단 이용가능 여부

*주5) 수계 : 주류장(主流長 : 주된 계곡의 길이)의 1/3지점에서 평가

*주6) 휴양기회 : 산책, 휴식, 야영, 자연학습, 등산, 놀이, 낚시, 수렵, 계곡물놀이, 승마 등

*주7) 예상 재해위험도 : 산사태, 급경사지, 토석류 등의 위험요인. 산사태취약지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불가능. 다만, 방재시설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

4. 숲속야영장 타당성 평가 조사서

항 목	평 가 점 수				
	1 점	2 점	3 점	4 점	5 점
가. 경 관					
(1) 환경파괴 정도	매우 심함	심한 편입	보 통	건 전 함	매우 건전
(2) 불쾌인자 *주1)	불쾌인자 2이상	불쾌인자 1	보 통	아름다움	매우 아름다움
(3) 상층목 수령	10년 이내	20년 이내	30년 이내	40년 이내	40년 초과
(4) 생육 상태 (울폐도)	매우 불량	불 량	보 통	양 호	매우 양호
나. 위 치					
(1) 접근도로 폭	이륜차 이하	1차선 확장 가능	1차선	2차선 확장 가능	2차선
(2) 인접도시와 거리지수 *주2)	지수 5이상	지수 4이상 5미만	지수 3이상 4미만	지수 2이상 3미만	지수 2 미만
(3)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*주3)	없 음	-	보 통	-	높 음
다. 휴양유발					
(1) 휴양기회의 다양성 *주4)	1~2종	-	3~4종	-	5종 이상
(2) 개발 전 이용	이용 전무	-	약간 이용	-	보통 이용

항 목	평 가 점 수				
	1 점	2 점	3 점	4 점	5 점
수준					
라. 개발여건					
(1) 시설가능면적 (경사15° 이하)	지정대상산림 최소면적의 1% 미만	지정대상산림 최소면적의 2% 미만	지정대상산림 최소면적의 3% 미만	지정대상산림 최소면적의 5% 미만	지정대상산림 최소면적의 5% 이상
(2) 토지소유권 *주5)	소유자 5인 이상	소유자 4인	소유자 3인	소유자 2인	소유자 1인
(3) 토지이용 제한요인 *주6)	매우 많음	많 음	보 통	없 는 편	전혀 없음
(4) 예상 재해 위험도 *주7)	높 음	-	보 통	-	낮 음
(5) 예상개발비 (지형변형정도)	필 요	-	보 통	-	없 음
(6) 주차장 확보	주차 공간 불가	매 입	확보 가능 (소규모)	확보 가능 (대규모)	기존 주차장 활용 가능

*주1) 불쾌인자 : 1. 산사태발생지 2. 미복구절개지 3. 채석장 등 광산 4. 산불피해지 5. 부적합 구조물 6. 쓰레기 매립 7. 빈번한 차량운행

*주2) 거리지수 : 접근시간(0.5시간 단위) × 도시 지수(300만명 이상 : 1, 100만~300만명 미만 : 2, 10만~100만명 미만 : 3, 10만명 미만 : 4)로서 최소값 적용

*주3)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: 예정지 진입지점까지 접근 가능한 버스, 지하철 등 자가용 이외의 교통수단 이용가능 여부

*주4) 휴양기회 : 산책, 휴식, 야영, 자연학습, 등산, 놀이, 낚시, 수렵, 계곡물놀이, 승마 등

*주5) 토지소유권이 다수이더라도 이용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1인으로 인정

*주6) 예정지내 문화재보호구역,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등 토지이용제한요인 편입 정도로 판단

*주7) 예상 재해위험도 : 산사태, 급경사지, 토석류 등의 위험요인. 산사태취약지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불가능. 다만, 방재시설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

5. 산림레포츠시설 타당성 평가 조사서

항 목	평 가 점 수				
	1 점	2 점	3 점	4 점	5 점
가. 경 관					
(1) 환경파괴 정도	매우 심함	심한 편임	보 통	건 전 함	매우 건전
(2) 불쾌인자 *주1)	불쾌인자 2이상	불쾌인자 1	보 통	아름다움	매우 아름다움
(3) 상층목 수령	10년 이내	20년 이내	30년 이내	40년 이내	40년 초과
(4) 생육 상태 (울폐도)	매우 불량	불 량	보 통	양 호	매우 양호
나. 위 치					
(1) 기존 입도 길이	기존 입도 4km이내	8km이내	16km내	24km이내	25km 이상
(2) 접근도로 폭	이륜차 이하	1차선 확장 가능	1차선	2차선 확장 가능	2차선
(3) 인접도시와 거리지수 *주2)	지수 5이상	지수 4이상 5미만	지수 3이상 4미만	지수 2이상 3미만	지수 2 미만
(4) 대중교통 이용	없 음	-	보 통	-	높 음

항 목	평 가 점 수				
	1 점	2 점	3 점	4 점	5 점
편의성 *주3)					
다. 휴양유발					
(1) 휴양기회의 다양성 *주4)	1~2종	-	3~4종	-	5종 이상
(2) 개발 전 이용 수준	이용 전무	-	약간 이용	-	보통 이용
라. 개발여건					
(1) 토지소유권 *주5)	소유자 5인 이상	소유자 4인	소유자 3인	소유자 2인	소유자 1인
(2) 토지이용 제한요인 *주6)	매우 많음	많 음	보 통	없는 편	전혀 없음
(3) 예상 재해 위험도 *주7)	높 음	-	보 통	-	낮 음
(4) 예상개발비 (지형변형정도)	필 요	-	보 통	-	없 음
(5) 주차장 확보	주차 공간 불가	매 입	확보 가능 (소규모)	확보 가능 (대규모)	기존 주차장 활용 가능

*주1) 불쾌인자 : 1. 산사태발생지 2. 미복구절개지 3. 채석장 등 광산 4. 산불피해지 5. 부적합 구조물
6. 쓰레기 매립 7. 빈번한 차량운행

*주2) 거리지수 : 접근시간(0.5시간 단위) × 도시 지수(300만명 이상 : 1, 100만~300만명 미만 : 2, 10만~100만명 미만 : 3, 10만명 미만 : 4)로서 최소값 적용

*주3)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: 예정지 진입지점까지 접근 가능한 버스, 지하철 등 자가용 이외의 교통수단 이용가능 여부

*주4) 휴양기회 : 산책, 휴식, 야영, 자연학습, 등산, 놀이, 낚시, 수렵, 계곡물놀이, 승마 등

*주5) 토지소유권이 다수이더라도 이용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1인으로 인정

*주6) 예정지내 문화재보호구역,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등 토지이용제한요인 편입 정도로 판단

*주7) 예상 재해위험도 : 산사태, 급경사지, 토석류 등의 위험요인. 산사태취약지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불가능. 다만, 방재시설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

6. 숲경영체험림 타당성 평가 조사서

항 목	평 가 점 수				
	1 점	2 점	3 점	4 점	5 점
가. 경 관					
(1) 환경파괴 정도	매우 심함	심한 편입	보 통	건 전 함	매우 건전
(2) 불쾌인자 *주1)	불쾌인자 2이상	불쾌인자 1	보 통	아름다움	매우 아름다움
(3) 상층목 수령	10년 이내	20년 이내	30년 이내	40년 이내	40년 초과
(4) 생육 상태 (울폐도)	매우 불량	불 량	보 통	양 호	매우 양호
나. 위 치					
(1) 접근도로 폭	이륜차 이하	1차선 확장 가능	1차선	2차선 확장 가능	2차선
(2) 인접도시와	지수 5이상	지수 4이상	지수 3이상	지수 2이상	지수 2 미만

항 목	평 가 점 수				
	1 점	2 점	3 점	4 점	5 점
거리지수 *주2)		5미만	4미만	3미만	
(3)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*주3)	없음	-	보통	-	높음
다. 휴양유발					
(1) 휴양기회의 다양성 *주4)	1~2종	-	3~4종	-	5종 이상
(2) 개발 전 이용 수준	이용 전무	-	약간 이용	-	보통 이용
라. 개발여건					
(1) 시설가능면적 (경사15° 이하)	조성대상 산림 면적의 1% 미만	조성대상 산림 면적의 2% 미만	조성대상 산림 면적의 3% 미만	조성대상 산림 면적의 5% 미만	조성대상 산림 면적의 5% 이상
(2) 토지소유권 *주5)	소유자 5인 이상	소유자 4인	소유자 3인	소유자 2인	소유자 1인
(3) 토지이용 제한요인 *주6)	매우 많음	많 음	보 통	없는 편	전혀 없음
(4) 예상 재해 위험도 *주7)	높 음	-	보 통	-	낮 음
(5) 예상개발비 (지형변형정도)	필 요	-	보 통	-	없 음
(6) 주차장 확보	주차 공간 불가	매 입	확보 가능 (소규모)	확보 가능 (대규모)	기존 주차장 활용 가능
마. 숲경영체험 여건					
(1) 산림경영계획 작성 및 실적 *주8)	산림경영계획 수립 후 미실적	산림경영계획 수립 후 20% 이행	산림경영계획 수립 후 40% 이행	산림경영계획 수립 후 60% 이행	산림경영계획 수립 후 80% 이상 이행
(2) 숲경영체험을 위한 기반시설 확보 *주9)	숲경영체험 기반시설 1개	숲경영체험 기반시설 2개	숲경영체험 기반시설 3개	숲경영체험 기반시설 4개	숲경영체험 기반시설 5개

*주1) 불쾌인자 : 1. 산사태발생지 2. 미복구절개지 3. 채석장 등 광산 4. 산불피해지 5. 부적합 구조물 6. 쓰레기 매립 7. 빈번한 차량운행

*주2) 거리지수 : 접근시간(0.5시간 단위) × 도시 지수(300만명 이상 : 1, 100만~300만명 미만 : 2, 10만~100만명 미만 : 3, 10만명 미만 : 4)로서 최소값 적용

*주3)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: 예정지 진입지점까지 접근 가능한 버스, 지하철 등 자가용 이외의 교통수단 이용가능 여부

*주4) 휴양기회 : 산책, 휴식, 야영, 자연학습, 등산, 놀이, 낚시, 수렵, 계곡물놀이, 승마 등

*주5) 토지소유권이 다수이더라도 이용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1인으로 인정

*주6) 예정지내 문화재보호구역,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등 토지이용제한요인 편입 정도로 판단

*주7) 예상 재해위험도 : 산사태, 급경사지, 토석류 등의 위험요인. 산사태취약지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불가능. 다만, 방재시설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

*주8) 공자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에 따라 숲경영체험림 대상지에 대한 산림경영계획 수립 후 조림, 숲가꾸기, 임목생산, 시설, 소득사업 계획 대비 실적 비율

*주9) 기반시설은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조의8 관련 별표3의4 “숲경영체험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”에 명시된 기본시설의 운영에 있어 필요한 시설로, 숲경영체험림 대상지 내 목재 및 임산물 생산기반시설(기자재 보관 시설, 묘포장, 온실, 저온시설, 비닐하우스, 저장시설, 관수시설 등), 가공시설(건조 시설, 포장시설, 가공·선별 시설, 제재소 등), 유통시설(임산물 판매장, 출고장 등)에 해당하는 시설 등을 말함

7. 평가방식

- 평가항목에 대한 타당성 평가는 반드시 현장에서 실시하되, 시·도 또는 관계 분야 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할 것
- 현장조사 시 『타당성 평가 조사서』의 항목별 세부기준 해당란에 “○”로 표기
- 평가점수의 합이 총점 대비 66.6%(2/3)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정 또는 조성계획 승인 대상에 포함(적지 판정기준)

구 분	평가부문개수	평가항목 개수	총 합	적지 판정기준
자연휴양림	5	30	150점	100점 이상
치유의 숲	6	33	165점	110점 이상
산림욕장	5	15	75점	50점 이상
숲속야영장	4	15	75점	50점 이상
산림레포츠시설	4	15	75점	50점 이상
숲경영체험림	5	17	85점	57점 이상

- 「경북·경남·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」 제 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은 평가점수의 합이 총점 대비 60%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정 또는 조성계획 승인 대상에 포함(적지 판정기준)

구 분	평가부문개수	평가항목 개수	총 합	적지 판정기준
자연휴양림	5	30	150점	90점 이상
치유의 숲	6	33	165점	100점 이상

- 『타당성 평가 현지조사 결과서』를 작성하여 지정 또는 조성계획 승인 신청 시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

8. 타당성 평가 현지조사 결과서

가. 평가 대상 산림

- 1) 자연휴양림 등의 명칭 :
- 2) 위 치 : 도 군 면 리 산 번지 외 필
- 3) 면 적

(단위 : m²)

총 면적	이미 평가를 완료한 면적	이번에 평가하는 면적

- 4) 소유별 지번, 지목 및 지적

행정구역	지번	지목	지적(m ²)	소유자 (소유권 확보상황)
계				

나. 산림경영계획 편성 여부

산림경영계획 편성 대상 면적				산림경영계획 편성 대상 제외 산림			
계	사업지	사업제한지	제지	계	산림보호구역	채종림	기타
m ²				m ²			

다. 산림의 특징

- 1) 지형조건 : 해발, 경사, 방위, 지세 등
- 2) 임상 : 수종 및 헥타르당 축적 등
- 3) 특이 수목이나 군락지 등 자생종의 유무와 보호 및 활용계획
- 4) 수원 : 계곡부의 수량이 풍부한지 여부 등
- 5) 기암괴석 : 특징적인 바위, 봉우리, 고갯길 등 이름
- 6) 희귀 동·식물 분포 및 서식 : 천연기념물 및 야생동물 종류, 밀도 등
- 7) 경관 : 계곡 및 봉우리, 임상 등 경관
- 8) 인근지역 : 사찰, 명승고적, 유적지, 온천, 약수터, 저수지 등
- 9) 지역특산물 : 산림부산물(산나물, 열매, 버섯 등) 및 기타 부산물(목공예품, 향토음식 등)의 종류 등

라. 입지

- 1)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충분히 있는지 여부
- 2) 경사의 완급성 및 산사태 등의 재해취약성 유무(방재시설 계획 등)
- 3) 대상지 내 사유지 유무(있다면 매입계획 및 매입예산 확보 계획)
- 4) 상·하수도 및 전기·통신 등 시설 도입의 용이성

마. 인문사회 환경

- 1) 지역주민과의 연대성(진입로, 대상지내 개재지 등 사유지 사용동의 및 수용의 협조성 등)
- 2) 자연휴양림등의 조성 예산의 연차별 확보 계획

3) 상수원 오염 등 주민생활 저해요인

바. 교통조건

- 1) 주변 대도시를 기점으로 인근 시·군 소재지까지의 거리, 소요시간
- 2) 인근 시·군 소재지에서 자연휴양림등까지의 차도(포장·비포장) 및 보행거리
- 3) 개설된 진입로의 유무 및 차량 진·출입의 용이성
- 4) 대중교통편(1일 왕복회수, 출발 및 소요시간)

사. 타 법령에 의한 용도지역 지정

- 1)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 :
- 2) 기타 다른 법령상의 용도지역 :

아. 예상 이용객 수(평시의 월평균 기준)

(단위 : 명)

합 계	봄	여 름	가 을	겨 울	비 고

자. 타당성 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점수 결과

※ 타당성 평가 조사서는 붙임으로 첨부

차. 시·도지사, 시·군·구청장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 의견

카. 자연휴양림등의 지정(또는 조성계획 승인) 타당성에 대한 종합 의견

타. 사진(10매 이상)

- 1) 자연휴양림등 조성 예정지 전경
- 2) 주요 지형적인 특징(폭포, 기암괴석 등)을 담은 근경
- 3) 주요 임상의 근·원경 등

파. 붙임 : 타당성 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점수표 1부.

9. 행정 사항

- 시행일 :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재검토기한 :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

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<제2018-71호, 2018. 8. 9.>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제2023-57호, 2023. 7. 24.>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제2024-23호, 2024. 3. 20.>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제2026-49호, 2026. 5. 22.>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